

# 기술료 제도 안내

[건설 교통 R&D]

2009.8

# CONTENTS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와 기술료

- 1. 기술료의 관리 프로세스
- 2.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 규정
- 3. 소유 기준
- 4. 성과 보고
- 5. 기술료의 개요
- 6. 기술료의 징수
- 7. 기술료의 감면
- 8. 기술료의 사용
- 9. 참고자료

# 1. 기술료의 관리 프로세스

연구개발  
결과물  
관리

과제 수행기관

- 지재권 출원/등록
- 결과물 신고  
(6개월 이내)

기술실시  
계약

연구개발결과물  
소유 기관

실시기업

- 기술료 감면 신청
- 계약 체결
- 기술실시계약보고서  
(15일 이내)

기술료  
징수/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 기관

실시기업

- 기술료 징수
- 전문기관 납부
- 기술료징수결과보고  
(30일 이내)

기술료  
사용

연구개발결과물  
소유 기관

- 기술료사용실적보고서  
(다음년도 2월말)

## 기술료 업무 세부 내용

<p>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 <b>주관연구기관</b>(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 <b>단독 소유 원칙</b></li> <li>- 운영규정 제39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b>참여기관</b> (공동, 위탁, 참여기업) 또는 <b>개인 소유 가능</b></li> <li>- 참여기업에는 <b>우선실시권 부여</b></li> </ul>
<p>↓</p>		
<p>기술실시 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계약체결</b> : <b>소유기관</b> ↔ <b>실시기업</b></li> <li>- 기술실시계약서 3부 작성(평가원장 날인)</li> <li>※ <b>소유기관 자체실시</b>의 경우 <b>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 제출</b></li> <li>○ <b>기술료감면</b> : <b>장관 승인</b> 다만 <b>중소기업, 조기납부</b>의 경우 <b>전문기관장 승인</b></li> </ul>
<p>↓</p>		
<p>기술료 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술료 납부</b> : <b>실시기업</b> → <b>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b></li> <li>※ <b>영리기관</b>은 징수 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b>평가원에 납부</b></li> </ul>
<p>↓</p>		
<p>기술료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유기관 사용</b> : <b>연구원 인센티브, 연구개발 재투자</b> 등에 사용</li> <li>○ <b>부처 사용</b> : <b>기재부와 협의하여 사용</b></li> </ul>

# 2.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유형적 결과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무형적 결과물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참여기관 자체 개발(주도적으로 개발)
2.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3. 소유 예시

2008.12. 31. 이전 협약과제의 적용기준

## 소유 기준

**공동 소유 원칙**  
(투자지분)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동소유 가능

**세부주관, 협동연구기관**  
단독 소유 불가, 공동소유 가능

소유불가

기업의 지분 소유

## 연구단(주관)이 세부과제1 수행



## 연구단, 사업단의 주관연구기관 해석

- 연구단 : 연구단을 총괄하는 주관연구기관
- 사업단 : 핵심주관연구기관(사업단 운영관리지침)

# 2009. 1. 1. 이후 협약과제의 적용기준

## 소유 기준

### 단독 소유 원칙 (발명자주의)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단독** 소유

자체개발, 주도적 개발  
결과물의 경우  
협약으로 **단독** 소유 가능

장관의 판단에 따라  
협약으로 **공동** 소유 가능

## 연구단(주관)이 세부과제1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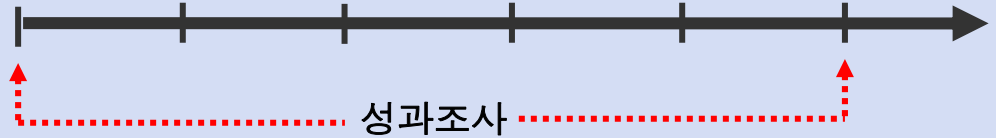
### 연구단, 사업단의 주관연구기관 해석

- 연구단 : 연구단을 총괄하는 주관연구기관
- 사업단 : 핵심주관연구기관(사업단 운영관리지침)

# 4. 성과 보고



R&D종료 (최종평가)    1년 후    2년 후 (추적평가)    3년 후    4년 후    5년 후



## 특히, 실용신안 등

- 출원 또는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신고  
평가원 연구관리포탈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등록

##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5년간 매년 2월말 제출  
평가원 연구관리포탈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서류제출

연구자 개인, 연구개발 비참여기관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부적절하게 소유한 경우 변경 조치

# 5. 기술료의 개요

## 정의

-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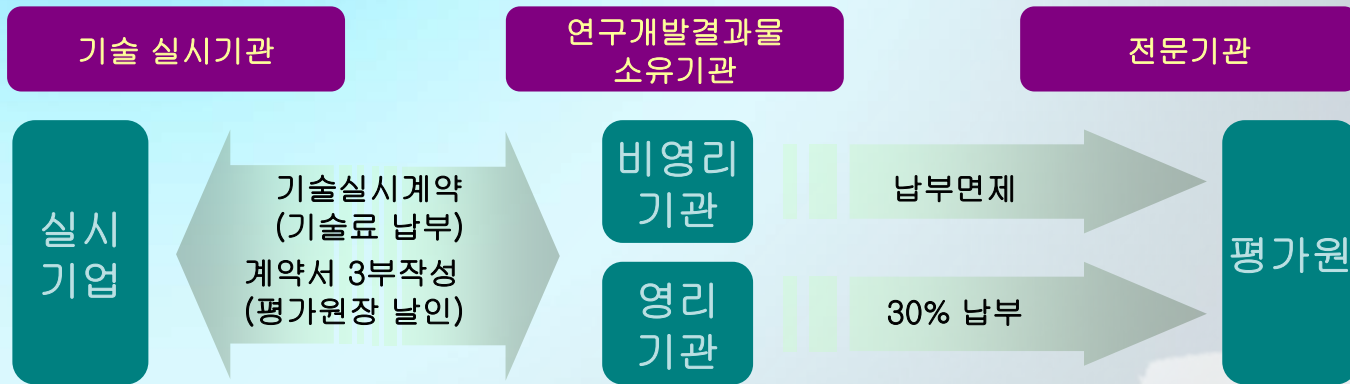
※ **주의** : 소유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은 기술료의 일부에 해당함

## 기술료의 발생(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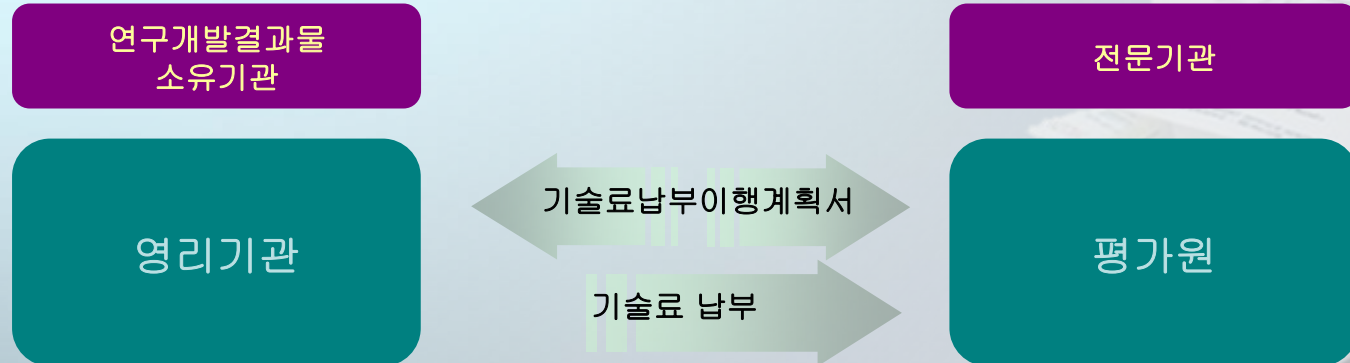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권자가 기술실시계약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장 일반적**)
  - 연구개발 **비참여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참여기업 동의 필요**)
- ※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의 당사자로 서명 날인(2008.6.부터)
-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도록 협약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 제출

# 관리체계

##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징수



## ● 전문기관이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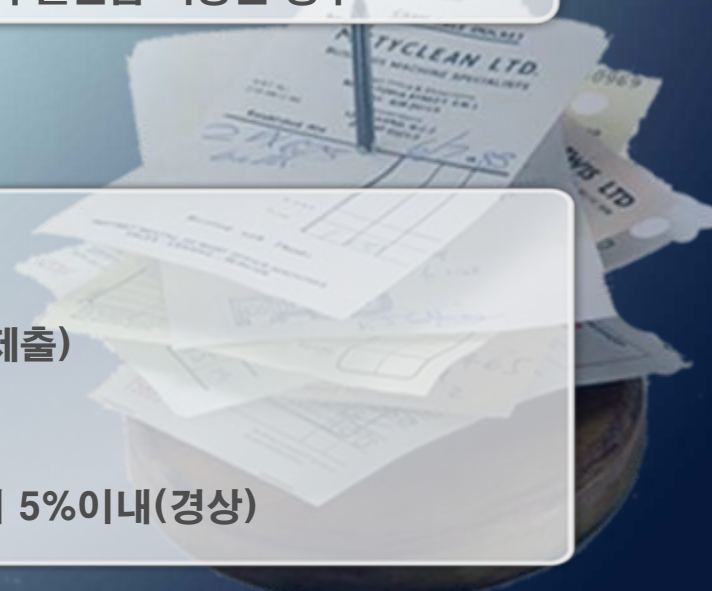
# 6. 기술료의 징수

## 기술실시계약 방법

- 소유기관의 장은 과제종료 6개월 이내에 1건 이상 계약 체결(자체실시 포함)
  - ※ 2009년 7월 이후 신규 및 계속과제 협약 이후부터 적용
- 고정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혼합형태 포함) 선택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료는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계약하되, 아래의 경우는 인정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관이 감면 승인**하는 경우
  - 통상실시로서 **경상기술료**로 계약하는 경우
  - 정부출연금 이하의 고정기술료 + 경상기술료
  - 여러 기관이 기술을 **공동사용**하면서 납부하는 금액의 합이 정부출연금 이상인 경우

## 기술료 징수 방법

- 소유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
  - 고정기술료의 경우 :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 경상기술료의 경우 : 매출액의 일부(협약에 따름, 산출내역 제출)
- 전문기관이 소유기관으로부터 징수
  - 고정기술료의 경우 :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 경상기술료의 경우 : 정부출연금의 10%(선금금) + 매출액의 5%이내(경상)



# 7. 기술료의 감면

## 감면 대상

- 연구개발사업 특성 등 기술료의 감면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면
- 중소기업 또는 조기납부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감면

감면 종류	내 용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결과 이용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70% 상당 기술료 감면
조기납부 감면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 전부를 기술실시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 1년 이내 납부 : 30% 감면 · 2년 이내 납부 : 20% 감면 · 3년 이내 납부 : 10% 감면

## 감면 절차

소유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면

# 8. 기술료 사용

## 기술실시계약이 '07.2.7. 이전에 체결된 경우

규정 적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02. 03. 19.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업지침 적용</li> <li>- 협약서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업지침 적용</li> <li>- 협약서에 따름</li> </ul>
'02. 03. 20. ~ '05. 0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전문기관 납부:A*30%이상</li> <li>②참여연구원의 보상:(A-①)*50%이상</li> <li>③연구개발 재투자:(A-①)*30%이상</li> <li>④기관운영경비:(A-①)*10%이내</li> <li>⑤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전문기관 납부:A*50%이상</li> <li>②참여연구원의 보상:(A-①)*50%이상</li> <li>③연구개발 재투자:(A-①)*30%이상</li> <li>④기관운영경비:(A-①)*10%이내</li> <li>⑤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보상</li> </ul>
'05. 06. 01. ~ '07. 02.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전문기관 납부:A*20%이상</li> <li>②참여연구원의 보상:A*50%이상</li> <li>③연구개발 재투자:(A-①-②)*50%이상</li> <li>④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전문기관 납부:A*30%이상</li> <li>②참여연구원의 보상:(A-①)*50%이상</li> <li>③연구개발 재투자:(A-①-②)*50%이상</li> <li>④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보상</li> </ul>

과제의 협약일 기준

\* A =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기술실시계약이 '07.2.8. 이후에 체결된 경우

규정 적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기술실시계약일</p> <p>'07. 02. 07. ~ '08. 12. 31.</p>	<p>①전문기관 납부:A*20%이상 ②참여연구원의 보상:A*50%이상 ③연구개발 재투자:(A-①-②)*50%이상 ④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보상</p> <p><b>대학은 전문기관 납부 폐지 ( '08.5.27. 이후 납부분 부터)</b></p>	<p>①전문기관 납부:A*30%이상 ②참여연구원의 보상:(A-①)*50%이상 ③연구개발 재투자:(A-①-②)*50%이상 ④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보상</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기준</p> <p>'09. 01. 01. 이후</p>	<p>①전문기관 납부:<b>폐지</b> ②참여연구원의 보상:A*50%이상 ③연구개발 재투자,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보상</p>	<p>①전문기관 납부:A*30%이상 ②참여연구원의 보상:A*35%이상 ③연구개발 재투자,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보상</p>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 9%(2013년까지, 대학은 제외)

· A =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9. 참고자료

사례 : 정부출연금 1억원에 대한 기술료(최대 감면 적용)

기술료 구분	납부방법	기업구분	기술료(천원)		※ $\alpha$ 는 매출 발생시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 일시납은 최대 감면 기준 ※ 비영리기관은 전문기관 납부 면제 (정부출연금 지분 100%)
			분납	일시납	
소유기관이 징수	고정	대기업	100,000	70,000	
		중소기업	30,000	21,000	
	경상	대기업	$\alpha$	-	
		중소기업	$\alpha$	-	
전문기관이 징수	고정	대기업	30,000	21,000	
		중소기업	9,000	6,300	
	경상	대기업	$10,000 + \alpha$	-	
		중소기업	$3,000 + \alpha$	-	


기술료의 종류	징수 형태	설명
고정기술료 (Fixed royalty)	의무 (정액)	연구개발이“성공”한 경우 부과(지경부, 환경부, 중기청) 영리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부과(국토부)
	조건부	연구개발 결과를“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출과 관계없이 부과 (교과부, 국토부)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조건부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여“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과 (지경부 일부사업, 교과부, 국토부)

## '09년 기술료규정 주요 개정 내용

항목	운영규정 개정 전	운영규정 개정 후
계약의 주체	주관연구기관의 장 ↔ 실시기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 실시기업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지분에 따른 <b>공동소유</b> 원칙 - 주관 및 참여기업 공동 소유	<b>단독소유</b> 원칙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단독 소유 - 협약에 따라 기업 단독 소유 가능
활용촉진 의무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b>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b> 하여야 함 (구 운영규정 제41조)  ※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면 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b>기술실시계약을 맺는 등 필요한 조치</b> 를 취하여야 함 (운영규정 제40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과제가 종료된 후 <b>6개월 이내에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어야</b> 함 (관리지침 제53조)  ※ 기술실시계약을 포함한 포괄적인 활용 촉진 조치를 하여야 함



#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